

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안

□ 제정이유

- 하수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, 공공 하수도의 사용, 사용료·점용료·부담금의 납부 등을 조례로 제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정비 및 유지 관리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시장은 배수설비의 설치·이설·개조·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 (안 제3조 제1항)
-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(안 제9조 제1항)
-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·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.(안 제13조 제1항)
-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·증설에 필요한 설계비, 용지비, 공사비, 감리비, 부대비로 한다. 다만 하수관거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. (안 제18조 제1항)
- 시장은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한다.(안 제24조)

□ 검토내용

- 하수도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
- 환경부 훈령 제380호('97. 12. 30)에 의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안에 근거한 제정 조례안으로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며
- 하천 수질오염방지 등이 강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볼 때 하수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한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단지 98년 4월에 환경부에서 훈령을 통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이제 동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은 시기를 일실한 처사로 지적됨.
- 별첨 1의 하수도 사용 요율을 6개 종별로 월 사용량에 따라 m³당 단가를 경기도내 인근 시군인 안양등 8개 시군의 산술 평균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- 종별 하수 배출량의 산정시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어(조례안 제15조) 사용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며 계측장치 설치전 사용료 부과시 배출량산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됨